

Q&A

귀화관련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은?

A.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일로부터 1년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거나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해야 합니다.

※ 상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귀화허가일로부터 1년이 지난 때 대한민국 국적상실

귀화허가통지서 수령



기본증명서 발급(시청, 구청, 읍·면사무소)



외국국적 포기증명서* 또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 제출(출입국관리사무소)

* 본국 영사나 관련 공무원이 발급



외국국적 포기확인서 또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확인서 발급(출입국관리사무소)



주민등록(읍·면·동사무소)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의 의미는?

A.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일로부터 1년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이 원칙이나, 대한민국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외국국적불행사 서약) 하면,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내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하므로

- 반복하여 외국 여권으로 대한민국에 출·입국한 경우
- 외국국적을 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인등록 또는 거소신고를 한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대한민국에서 외국 여권 등을 이용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단체 또는 교육기관 등에 대하여 외국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행사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국적선택명령(6개월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할 수 있는 대상은?

A. • 혼인귀화 허가자*

*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이혼 등의 사유로 혼인관계가 단절된 사람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 특별공로자, 우수인재로 귀화허가 또는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 「민법」상 성년이 되기 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자
 -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 본인의 뜻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1년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할 수 없는 자로서
 -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외국 국적 포기가 불가능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정이 인정되는 사람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지체 없이 외국국적 포기 절차를 개시*하였으나,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허가 후 1년 내에 포기절차를 마치기 어려운 사람 (그 사정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 * 국적취득 후 3개월 이내 본국 정부 또는 대사관 등에 외국국적 포기신청

귀화신청자를 위한
국적취득 절차
알아보기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이 되려면
귀화신청 후 필기시험, 면접심사, 외국국적 포기 등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화 허가 흐름도

「국적법」 제4조~제7조



신청 및 접수(출입국관리사무소)

- 일반귀화, 간이귀화(혼인귀화 포함), 특별귀화로 구분
-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접수
※ 구비서류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안내
- 미성년 자녀는 부 또는 모가 귀화신청 시 수반신청 가능



필기시험 및 면접심사(출입국관리사무소)

- 필기시험 대상 :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
* 혼인귀화 신청자는 필기시험 면제(혼인단절자는 필기시험 대상)
- 면접심사 대상 :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
- 필기시험 및 면접심사 면제 대상자는 「국적법 시행규칙」 제4조 등에 규정
※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기본소양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필기시험 및 면접심사 면제



귀화 요건 심사(출입국관리사무소)

- 필기 및 면접 합격자를 대상으로 필요 시 체류동향 조사 실시
공통 체류실태, 생계유지능력, 범죄경력 등 확인
입양 입양의 진정성 등 확인
혼인귀화 정상적인 혼인관계 유지 여부 등 확인
- 필기시험 및 면접심사 결과, 조사 내용 등을 종합하여 귀화 요건 심사



심사 결정(법무부)

- 범죄경력조회, 신원조회 등을 거쳐 귀화허가 여부 최종 심사 결정



고시 및 통보(법무부)

- 관보고시 및 본인 통지
- 대법원 등 관계기관 통보(가족관계등록부 생성)



외국국적 포기 등(출입국관리사무소)

- 허가 후 1년 내 외국국적 포기(원칙) 또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대상자는 「국적법」 제10조에 규정
※ 혼인귀화 허가자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가능
(혼인단절자는 외국국적 포기 대상)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주민센터)

2017. 2. 28. 기준

Q&A

귀화관련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귀화 신청 후 처리기간은?

- A. 귀화 신청 후 처리기간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www.immigration.go.kr 또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www.hikorea.go.kr의 공지사항에서 확인(매월 초 업데이트) 가능합니다.

처리기간은 접수 후 일반적인 소요기간을 뜻하므로 개인별 심사과정 따라 허가(불허) 시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필기시험과 면접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는 대상은?

- A. 필기시험과 면접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국적법 시행규칙」 제4조와 「국적업무처리지침(법무부 예규)」 제7조, 제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www.law.go.kr 에서 해당 내용 확인 가능

필기시험 면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혼인귀화 신청자*, 미성년자, 만 60세 이상인 사람, 재신청자 중 최근 3년 이내에 필기시험을 합격한 사람 등
*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이혼 등의 사유로 혼인관계가 단절된 사람은 필기시험 대상임

면접심사 면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국적회복자의 배우자(회복 전 혼인한 배우자)로서 만 60세 이상인 사람, 국적판정을 받은 사할린동포의 배우자(판정 전 혼인한 배우자)로서 만 60세 이상인 사람, 만 15세 미만인 사람 등
*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였으나 기본소양이 부족한 경우 면접 실시



필기시험과 면접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 A. 필기시험은 대한민국의 역사·정치·문화·국어 및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기본소양을 평가하는 절차이며,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수준의 문제가 출제됩니다.

객관식 20문항이 출제되며,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을 받으면 필기시험을 합격합니다.

면접심사는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세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신념,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소양, 애국가 가창 여부, 예의 및 태도 등을 평가하는 절차이며 면접관과 응시자 간 구술문답(묻고 답하기)으로 진행됩니다.

필기시험과 면접시험 모두 불합격자에 대해 1회 추가 응시 기회를 부여 하고 있으며,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www.hikorea.go.kr에 게시된 “귀화필기시험 본보기 문제”, “귀화면접심사 본보기 문제”, “기본 소양 교육책자”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접심사 당일 동반대상은?

- A. 혼인귀화* 신청자는 국민인 배우자, 특별귀화** 신청자는 국민인 부 또는 모(입양의 경우 양부 또는 양모)를 면접심사 당일에 동반해야 합니다.

* 혼인귀화 :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임을 이유로 귀화신청

** 특별귀화 :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임을 이유로 귀화신청

- 동반대상자에게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 제출